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'15년 9월 24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24일(목) 06:00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산업피해조사과 서정란 과장, 송병철 사무관(5864), 김지영 주무관(5868)
덤핑조사과 방순자 과장, 박종희 사무관(5873), 나강운 사무관(5875)

무역위원회, 『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』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홍순직)는 '15. 9. 23(수), 제346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○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(이하 PET: Polyethylene Terephthalate) 필름에 대해서 7.42~12.92%의 헐값판매(이하 덤핑)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,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.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무역위원회는 도레이첨단소재(주) 외 3사가 요청한 『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(2차 재심)』건에 대하여,

-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3년동안 공급자별*로 다음과 같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.

* 중국(%) : 천진완화 7.42, 푸웨이 12.92, 산토우, 이화도래이, 장수중다, 저장우밍, 티에스에프, 상하이 12.92, 그 밖의 공급자 12.92
* 인도(%) : 가웨어 12.92, 진달 12.92, 그 밖의 공급자 12.92

○ 무역위원회는 금년 1월 15일 조사개시 후 국내생산자, 수입자, 수요자 및 해외공급자(중국, 인도)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,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였다.

○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필름 수입으로 인하여 재발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.

*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 조사 개시 공고일: '15. 1. 15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송병철 사무관(☎ 044-203-5864), 김지영 주무관(☎5868), 덤핑조사과 박종희 사무관(☎ 044-203-5873), 나강운 사무관(☎58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	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 최종판정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 : 도레이첨단소재(주),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(주)효성, (주)화승인더스트리

○ 재심사대상국 : 중국 및 인도

○ 재심사대상물품

- 품명 :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필름
- 관세분류(HSK) : 3920.62.0000, 3920.69.0000
- 용도 : 광학용(LCD 및 PDP의 소재 등), 포장용(스낵포장용, 용기 뚜껑용 등), 산업용(스탬핑호일, 선팅필름, 점착테이프 등) 및 그래픽용(잉크젯·레이저프린터용, 인쇄제판용 등) 등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도레이첨단소재(주),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(주)효성, (주)화승인더스트리, 에스케이씨(주)

○ 수입자 : (주)남홍, (주)세광하이테크, (주)선경홀로그램, (주)메탈라인, (주)에스에프씨 등

○ 수요자 : 율촌화학(주), 보우테이프(주), (주)두리필름판매, (주)세종필름, (주)제이피앤씨 등

○ 국내시장 규모('14년) : 약 1조 1,864억원(약 28만톤)

* 시장점유율(물량기준) : 국내생산품(79.5%), 재심사대상국가(1.7%)

□ 그 동안의 조사경과

○ 조사개시결정 공고 ('15.1.15.), 공청회('15. 6.25.), 최종판정('15. 9.23.)